

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(2019.1.21.)

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심 사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. 13.(거창군수)
- 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2019. 1. 18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

나. 계획의 변경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4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8년말 조성액 ①	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		2019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	
		수 입 ②	지 출 ③			
합계(7개)	12,816,310	805,797	695,550	12,926,557	110,247	
총 무 위원회	식품진흥 기금	77,506	26,310	15,110	88,706	11,200
	중소기업 육성기금	6,416,976	107,100	210,000	6,314,076	△102,900
	사회복지 기금	3,362,582	176,726	106,000	3,433,308	70,726
	아름예술제 진흥기금	500,452	6,444	6,400	500,496	44
	체육진흥 기금	1,084,206	17,871	20,000	1,082,077	△2,129
산업건설 위원회	재난관리 기금	1,092,362	445,000	329,440	1,207,922	115,560
	옥외광고 발전기금	282,226	26,346	8,600	299,972	17,746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